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8월 22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10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3년 8월 29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권병준)

□ 제안이유

-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-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서 기대 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,
-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서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신·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안에 면적 49,400m²의 규모로 공원을 지정·조성코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공원조성 위치가 오정구청사와 인접한가?	○ 오정구청사와 공원계획 부지 사이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어 바로 접하지는 않음.
○ 오정구청사와 인접해 있어야 이용에 용이하다고 보는데?	○ 당초 계획수립시는 인접되어 있었으나, 청사 바로 옆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가가 높아 사업비의 과다와, 또한 토지 소유주들이 공원에서 제작을 원하는 민원등이 있어 그린벨트인 현재위치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음.
○ 오정구 관내는 제대로 된 공원이 없음 계획된 14,900여평의 규모는 대공원이라 할 수 없음. 규모를 좀더 크게 변경 해야 한다고 보는데?	○ 50,000평방미터 이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 미반영 상태에 있고, 또한 50,000평방미터 이상의 규모는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우선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, 추후 2단계 사업으로 계속 넓혀 나갈 것임.
○ 공원 조성을 한번에 제대로 크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1.2단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?	○ 한번에 규모를 크게하는 것이 타당하나, 건설교통부 승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 시행이 10년내에는 어렵지 않겠나 보고 우선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○ 오정대로에서 공원으로 차량등의 진·출입이 가능한가?	○ 현재 시설결정 코자 하는 부지에서는 진·출입이 불가함.

질 의	답 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도시과에서 했는가? ○ 계획된 공원의 위치상 진·출입이 가능한곳은 베르네천 방향 한곳 뿐으로 공원이 용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 할것으로 판단 되므로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오정대로, 베르네천, 계획도로인 중로1-16호선 등 어느 지역에서든 진·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본계획수립은 녹지공원과에서 했으며, 도시계획입안은 도시과에서 했음. ○ 검토하겠습니다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찬성의견 채택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 음

7. 기타필요한 사항

- 없 음

8. 붙임서류 : 1)의견서 1부. 2)위치도 1부.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균린공원)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

의안번호	제173호	안건명	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균린공원) 결정(안)에 대한 의견안
제출자	부천시장	의결연월일	제106회 부천시의회(시회) 제3차 본회의(2003. 9. 3)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균린공원) 결정안에 대한 의견

신·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
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서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질적
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
나, 현재 계획된 위치에서는 접근성이 취약하여 베르네천에서 만이 접근 가능
하므로 위치를 오정대로 방향으로 일부 변경하여 오정대로, 베르네천, 계획도로인
중로 1-16호선 등 어느곳에서도 진·출입이 용이하도록 공원 편입 계획 부지를
조정하여 변경 결정함이 타당함.

※ 위치변경 도면 참조<붙임>

2003년 9월 3일

부천시의회 의장



부천시도시계획시설(공원:근린공원)결정안에대한의견안

의 안 번 호	제173호
의 결 년월일	2003. 9. 3 (제106회)

제출연월일 : 2003. 08. 2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공원계획지가 위치한 오정동 2-1번지 일원은 오정구청사의 입지로 인하여 향후 오정구의 중심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나 신시가지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,
-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건전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·조성함으로서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도시계획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신·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정구청사 북측의 개발제한구역에 면적 49,400m²의 규모로 공원을 지정·조성코자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목

부천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결정안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결정조서안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 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114	공원	근린공원 (오정대공원)	오정구 오정동 2-1번지 일원		증)49,400	49,400	

□ 도시계획시설(공원 : 근린공원)결정 사유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결정사유	비고
114	근린공원 (오정대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오정구청사의 입지와 함께 오정구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의 여가활동 및 교육공간에 부흥하는 오정구 중심의 공원 조성 ·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·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	

□ 참고사항

- 도시계획 용도지역 · 지구 · 구역 : 자연녹지지역, 죄고고도지구, 개발제한구역
- 사업시행시기 : 2003. ~ 2005.
- 사업시행자 : 부천시장(녹지공원과)
- 공원(근린공원) 편입토지 현황

- 소유자별 편입토지 현황

구분	계	시유지	사유지	기타	비고
면적(m ²)	49,400	3,306	46,094		
필지수	29	4	25		
구성비(%)	100.00	6.70	93.30		

- 지목별 편입토지 현황

구분	계	전	답	구거	도로	비고
면적(m ²)	49,400	1,263	44,831	1,424	1,882	
필지수	29	2	23	2	2	
구성비(%)	100.00	2.56	90.75	2.88	3.81	

○ 추정 소요사업비

구 분	총사업비	용지보상비	공사비	부대비
금액(백만원)	7,980	4,469	3,311	200

○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(안)

- 연차별시비확보 및 특별회계예산 확보

○ 도시계획 결정권자

- 공원(근린공원) : 경기도지사(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)

□ 기대효과

○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

○ 오정구 지역의 도시기반시설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
□ 위치도

